

무배당 가족사랑정기보험 상품요약서

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가족사랑정기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I. 상품의 특이사항

Q : 「무배당 가족사랑정기보험」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?

A : 「무배당 가족사랑정기보험」은 하나생명 모바일앱의 전자청약을 통해 직접 가입하실 수 있으며, 다른 채널의 정기보험에 비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. 이 보험은 활동기의 사망보장설계가 가능한 상품이며 만기보험금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같은 기간 동안 사망보장이 가능한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.

Q : 보험료 납입면제는 어떤 경우에 되나요?

A : 피보험자가 '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%이상인 장애상태'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.

Q : 「무배당 가족사랑정기보험」은 보험료 할인이 되나요?

A : 회사는 정상유지되고 있는 당사 보험상품의 기가입자(피보험자 또는 계약자)가 이 계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, 이 계약의 보험료의 3%를 할인하여 영수하며, 제 1 회 보험료부터 할인을 적용합니다.

Q : 「무배당 가족사랑정기보험」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나요?

A : 「무배당 가족사랑정기보험」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예금자보호 한도는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“1 인당 5 천만원까지” (본 보험회사 여타 보험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“1 인당 5 천만원까지” 보호됩니다.

II. 보험가입 자격요건

1. 보험종류

- 보장성보험
- 개인형
- 순수보장형

2. 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기간 및 피보험자 가입나이

보험기간	보험료 납입기간	피보험자 가입나이
10년, 20년, 30년	전기납	20세 ~ 60세

3. 보험료 납입주기

월납

4. 가입한도

보험가입금액 300만원~5,000만원

5. 건강진단 여부

「무배당 가족사랑정기보험」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, 나이,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,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.

Ⅲ.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

1. 상품의 구성

무배당 가족사랑정기보험	(주계약)
+ 표준하체인수특약	(제도성특약)
+ 선지급서비스특약	(제도성특약)
+ 특정신체부위·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	(제도성특약)
+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	(제도성특약)
+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	(제도성특약)

2.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

아래의 내용은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[기준 : 보험가입금액 1,000 만원]

급부명	지급사유	지급금액
사망보험금	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	1 억원

(주)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%이상의 장애상태가 되었을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.

3.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

가.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

-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
-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-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
나. 보험계약의 무효 관련 사항

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,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. 다만,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보험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.

-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서면(「전자서명법」 제 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「상법 시행령」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·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)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. 다만,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.
- 만15세 미만자,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. 다만,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유효합니다.
-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. 다만,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, 위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

다.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
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,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·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(HIV)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

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
터 5년 이내(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)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계약이
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

라.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

- 계약 전 알릴 의무
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(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) 청약서에서 질문
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. 다만,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 3
조(의료기관)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
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.

-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
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계
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2년(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
년)이내에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, 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
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IV. 보험료 산출기초

1. 적용이율

Q :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?

A :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점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, 이 할인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,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.
「무배당 가족사랑정기보험」상품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.5%입니다.

2. 적용위험률

Q :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?

A :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,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.

구분	사망률	
	남자	여자
20 세	0.000280	0.000200
40 세	0.000650	0.000430
60 세	0.003390	0.001390

3.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

Q :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무엇인가요?

A :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,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.

V.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

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,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 「무배당 가족사랑정기보험」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.

VI.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

1.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

Q :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,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
A : 우리 하나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.

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,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.

2. 해약환급금 예시

[기준 : 보험가입금액 1,000 만원, 가입나이 40 세, 20 년 만기, 20 년납, 월납 (단위 : 원)]

경과기간	남자			여자		
	납입보험료(A)	해약환급금(B)	환급률(B/A)	납입보험료(A)	해약환급금(B)	환급률(B/A)
3개월	38,700	0	0.00%	20,400	0	0.00%
6개월	77,400	0	0.00%	40,800	0	0.00%
9개월	116,100	0	0.00%	61,200	0	0.00%
1년	154,800	18,486	11.94%	81,600	486	0.60%
3년	464,400	189,357	40.77%	244,800	73,957	30.21%
5년	774,000	345,629	44.65%	408,000	141,529	34.69%
7년	1,083,600	479,400	44.24%	571,200	196,600	34.42%
10년	1,548,000	594,900	38.43%	816,000	235,700	28.88%
20년	3,096,000	0	0.00%	1,632,000	0	0.00%

※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,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(해약공제액 포함)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.

VII. 보험가격지수

Q : 보험가격지수란 무엇인가요?

A :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(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)을 참조순보험료 총액*과 평균사업비총액**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“보험가격지수”라고 합니다.

*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(평균공시이율), 평균해지율 및 참조순보험료를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

**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(역산)한 값

[기준: 40 세, 월납]

상품명	보험기간	납입기간	보험가격지수		가입금액 (만원)
			남자	여자	
무배당 가족사랑정기보험	20	20	78.3%	74.8%	1,000